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9. 4.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9. 5.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전체회의(2024.12.6.)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5.)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12.10.)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 윤준병의원)

현행법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음(제328조 등).

그러나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해진 오늘날에는 이러한 특례규정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에서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에게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고 있는 「형법」 제328조제1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음(2024. 6. 27. 2020헌마 468등 결정).

이에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범죄에 따른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죄를 범하는 등 친족 간 유대관계를 크게 해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친족상도례의 내용을 포함한 현행 형법이 1953. 09. 18.에 제정된 이

후 70년이 넘으면서 산업화 및 도시화는 우리 친족과 가족 문화에 상당한 변화를 이끌었음. 호주제의 폐지, 농·어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핵가족화를 넘어 1인 가구의 빠른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변화로 인하여 가족제도 및 구조가 과거와 현저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일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하기만 하면 “필요적 형면제”의 법적효과를 부여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개정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게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인정됨.

(1) 법적효과를 반의사불벌죄로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친고죄로 개정할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보다 존중하게 되고,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할 경우 고소가 없더라도 일단 수사 또는 소송을 진행·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국가형벌권을 보다 빠르게 개입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사항으로 보임.

(2)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액 또는 취득한 재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행한 친족간 범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의 내

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행한 친족간 범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2021. 7. 27.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서 사기, 공갈, 횡령, 배임과 관련한 일정한 재산범죄에 대해서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 가정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보호하여야 할 가족 구성원이 오히려 가해자가 된 경우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도 친족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하급심 판결에 따른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 등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입법 취지가 인정됨.

다만, 현행법 제348조제1항의 준사기죄의 경우 구성요건 자체가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요건을 이미 법문에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재물교부는 현행법 제348조에 따라 준사기죄에 해당하고, 준사기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를 준용하도록 한 제354조에 따라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 되나, 개정안 제344조제1항단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범한 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가 배제되는 비효율적인 입법구조가 초래되고 친족상도례 적용여부가 불분명해지는 등 법체계적

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을 고려하여 현행 제354조와 안 제344조제1항단서의 상호관계를 논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김용민위원)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의 적용 배제규정을 두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